

도시계획 관련 용도지역별 용도 비교

관련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. 14.>

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
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
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
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
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
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
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
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

⋮

관련법령 :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

제27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0.2.12.>

1.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"별표 1"과 같다.
2.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"별표 2"와 같다.
3.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"별표 3"과 같다.
4.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"별표 4"와 같다.
5.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: "별표 5"와 같다.
6.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"별표 6"과 같다. <개정 2015.04.15.>
7.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"별표 7"과 같다. <개정 2015.04.15.>
8.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: "별표 8"과 같다. <개정 2015.04.15.>

⋮

용도지역별 용도 비교표

용도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비고
건축할 수 있는(없는) 건축물	〈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〉 국토계획법 - 단독주택, 공동주택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종교시설 -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- 노유자시설	〈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〉 국토계획법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) - 판매시설(게임제공업) - 의료시설(격리병원) - 숙박시설 - 위락시설 - 공장(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, 두부제조업, 세탁업 등) - 자동차 관련 시설(폐차장) -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·도축장·도계장) - 자원순환 관련 시설 - 묘지 관련 시설	
	전주시도시계획조례 -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-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 제외) - 판매시설 - 의료시설(격리병원 제외) - 교육연구시설 - 수련시설 - 운동시설 - 업무시설 - 공장(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, 두부제조업, 세탁업 등) -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석유액, 화가스판매소) -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- 방송통신시설 - 발전시설	전주시도시계획조례 - 제2종근린생활시설(안마시술소) - 문화 및 집회시설 - 판매시설 -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 - 창고시설(하역장) - 자동차 관련 시설(주차장 외) -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가축시설·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, 인공수정센터 등) - 교정 및 군사시설 - 관광휴게시설(관망탑, 휴게소, 공원유원지 등) - 장례식장	

용도지역	일반상업지역	중심상업지역	비고
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	〈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〉 국토계획법 -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) - 위락시설(공원, 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서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제외) - 공장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, 고압가스 충전소, 저장소) - 자동차 관련 시설(폐차장) -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가축시설, 도축장, 도계장) - 자원순환 관련 시설 - 묘지 관련 시설 전주시도시계획조례 - 공동주택(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 복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합계의 80%미만은 제외) -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 대지,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외) - 위락시설(공원 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서 70미터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제외)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액화가스 취급소·판매소 제외) -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) -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및분재 등의 온실 등) - 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, 군사시설 제외)	〈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〉 국토계획법 - 단독주택(다른용도와 복합된 것 제외) - 공동주택(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 복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합계의 90%미만은 제외) -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) - 위락시설(공원, 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서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제외) - 공장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, 고압가스 충전소, 저장소 / 수소연료공급시설 제외) - 자동차 관련 시설(폐차장) -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- 자원순환 관련 시설 - 묘지 관련 시설 전주시도시계획조례 - 공동주택(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 복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합계의 80%미만은 제외) - 의료시설(격리병원) - 숙박시설(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 대지,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외) - 위락시설(공원 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에서 70미터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제외) 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석유판매소 제외) -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) - 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, 군사시설 제외) - 관광 휴게시설	